

예 산 총 칙

2017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17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515,162,648	15,454,879
일반회계	509,542,233	15,286,267
특별회계	5,620,415	168,612
기타특별회계	5,620,415	168,612
상·하수도사업특별회계	3,380,872	101,426
주택사업특별회계	20,000	600
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	904,398	27,132
사회진흥소득사업특별회계	50,100	1,503
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	1,100,058	33,002
천사성분재공원운영관리특별회계	164,987	4,950

제 2 조 2017년도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2017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0,5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4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는 상호간에 이용할 수 있다.